

漁港區內에서 埋立할 때

日本 漁港의 維持管理 ⑩

2. 대신(代臣)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

가. 인가란

어항구역내에서 매립면허권자인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매립면허 또는 승인을 하고자할 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매립에 관한 인가에 있어서는 매립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주무대신의 인가규정이 있으나 어항법에 의한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는 매립법에 의한 주무대신의 인가와와는 달리 어항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어항의 주무대신으로서의 인가로 해석되므로 매립의 구역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대신의 인가가 중복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더욱이 어항구역과 항만구역이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허권자는 도도부현지사가 아니라 어항관리자의 장(長)이므로 당해 면허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도도부현지사가 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점에 대하여는 법률의 불비라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어항관리자의 장이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나. 인가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매립가) 어항수축계획에 의한 매립 어항수축계획에 의한 매립이란 북해도개발국장이 어항법 제19조제3항규정에 의하여 어항수축계획에 따라 행하는 공공어항시설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과 국가이외의 자가 동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농림수산대신의 시행허가를 받아 행하는 어항수축계획에 의한 공공어항시설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을 말한다. 이들에 대하여는 다시 매립에 대한 인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매립면허는 그 규모가 큰 것은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가 있으나 어항수축계획은 매년도 예산의 범

위내에서 정해지고 있어 1년간의 계획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항수축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매립면허 모두에 대하여 농림수산대신의 인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항수축계획에 의거 1년이내에 완료하는 매립만이 인가가 필요치 않은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 1년이내에 매립호안등의 외곽시설물이 완성되고 또 매립지의 이용계획이 정해진 매립에 대해서는 그후 1년이내에 준공할 수 있는 것도 인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더욱이 어항수축사업에 의한 매립과 지방단독사업등에 의한 매립이 병행되는 경우, 어항개수·국부개발사업등 타사업에 의한 매립은 여기서 말하는 어항수축계획에 의해 행하는 매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제1종 또는 제2종어항구역내의 매립으로서 당해어항의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것. (위의 가)에 제제한 것은 제외)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가

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어항시설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으로서 지방 공공단체가 처음부터 수산청과 협의를 필한 이용계획에 의하여 어항관계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단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2) 이용상, 관리상 필요한 어항시설 또는 그 시설계획이 없는 위치에서 시행하는 (1)이외의 매립으로 다음과 같은 것

① 만입(灣入)해 있지 않은 외양(外洋)에 면한 위치에서 행하는 매립으로서 어항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것

② 방파제, 돌제, 박지(泊地) 또는 계류시설의 주변이나 내부에 파랑과 모래에 의한 영향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소규모의 매립

③ ①과 ②이외의 매립으로서 이와 유사한 것

2) 인가를 필요로 하는 매립

가) 제1종 또는 제2종어항구역내에서의 매립

이에 대해서는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매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어항의 관리상, 이용상 필요한 박지, 항로, 수로 등의 매립으로서 파랑, 수류(水流), 수심에 현저한 변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 또 어선의 이용, 항행, 정박계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 어항시설용지와 육역의 이용에 현저한 변동이나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 혹은 하수(河水), 파랑의 작용이나 모래의 이동, 퇴적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것, 그리고 어항관계 국고보조사업계획에 의한 각종 시설위치(구역)의 법선(法線), 사업량, 이용계획, 이용방법에 현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등 보조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위에서 말하는 매립이외의 매립으로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나) 제3종과 제4종어항구역내에서의 매립

이에 대해서는 모두 인가를 필요로 한다. (다만 인가가 필요치 않은 매립 가)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

3.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가.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어항시설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으로서 어항관계 국고보조사업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정하여 처음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산청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이용계획의 협의를 마쳤을 때에는 제1종 또는 제2종어항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매립인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인가의 수속

어항구역내에 있어서의 공유수면매립인가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수산청장관 통첩(어항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립인가신청절차등의 취급에 대하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요하는 매립에 대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할 때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가) 매립면허증 또는 승인서의 안(案) (면허조건 및 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포함)

나) 매립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서사본

다) 첨부서류 및 도면

(1) 매립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면

(2) 어항구역, 해안보전구역 또는 어항시설과 매립구역과의



관계를 표시한 도면(등심선을 기입할 것)

(3) 어항시설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의 경우는 이용계획서 및 이용계획평면도

(4) 어업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대하여 의결한 어업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등본 또는 초본

라) 매립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본 및 지선시정촌장(市町村長)의 의견서사본

마) 어항관리자의 의견서(시행자가 당해 어항관리자인 경우에는 불요)

2) 어항관계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매립인가신청서 제출시기등

가) 어항시설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요하는 것(지방단독사업에 의하여 행하는 것도 포함)에 대한 인가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열람기간만료후 제출할 것

나) 어항관계 국고보조사업에 의해 시행하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일까지 매립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은 매립에 대하여 면허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할 때는 보고서에 면허, 준공인가의 고시사본 또는 승인, 준공통지서사본을 각 보고서에 첨부하여 수산청에 제출한다.

3) 매립지의 용도와 보조금교부목적과의 관계

가) 어항시설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의 시행자이며 보조사업자인 자가 매립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

서의 용도란에 '어항시설용지'라고 기재하고, 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제7호의 도면(매립지의 용도 및 이용계획의 개요를 표시한 도면)에는 수산청과 이용계획 협의의 필한 것과 것과 동일한 평면도(성토 및 매수부분제외)를 첨부한다.

이런 경우 당해 매립지의 용도 및 면적은 매립면허시 결정된 것으로 하고 있다.

나) 어항수축사업의 시행허가신청서 및 어항관계 국고보조금등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대신의 인가 또는 수산청과 협의를 필한 어항시설용지의 이용계획평면도

(2) 매립면허(승인)서 사본

다) 어항관계 국고보조사업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어항시설용지로서 아직 이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용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매립지의 이용목적, 구분 및 면적 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결정되어 있는 매립에 대하여 그것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각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협의를 수산청에 하여 그 협의에 대한 회답일에 당해 매립에 대한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이 결정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4) 매립지배후의 공공지(公空地) 성토등의 취급

가) 공유수면의 매립과 더불어 배후국유해빈지(海濱地)등 즉 공공공지(公共空地)의 성토등을 행할 경우, 어항수축사업에 의한 것은 어항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시행인가, 기타사업에 의한 것은 동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공공공지의 점용, 성토 또는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받은 매립지에 대해서는 매립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고시일에 매립권자가 소유권은 취득하나, 당해 공공용지의 점용, 성토등의 부분은 어항법상으로는 국가의 공공용재산으로 존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면허를 할 때에는 매립부분과 성토부분을 명확히 구분, 처리함과 동시에 준공후에는 그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나) 전항의 공공공지의 성토등은 어항관리자가 어항법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협의에 따라 그를 관리하게 된 어항시설에 대하여는 어항관리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행하는 점용 또는 유지운영계획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위의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허가나 협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부지가 국가의 공공용 재산임을 감안, 그 사용에 있어서는 공공용 재산의 용도 혹은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토지의 위치, 입지조건, 사용목적 등을 감안하고 필요에 부응하는 다음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서 설명하는 바와같이 용도폐지등의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다.㉠